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0. 12 선고 2019가단2544(본소), 2020가단1097(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피 고 망 B의 수계인 C

피고(반소원고) D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피고 C2) : 원고는 피고 C에게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 : 원고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5. 3.접수 제853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500,6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갚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두 2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망 B가 대물변제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 시	금 액	변제기
2018. 7. 24.	금80,000,000원(50,000,000원 + 30,000,000원)	2018. . .
2018. 10. 4.	금50,000,000원	
2018. 11. 12.	금30,000,000원	2019. 6. 30.
2018. 11. 22.	금40,000,000원	2019. 6. 30.
2019. 2. 28.	금20,000,000원	
합계금	금220,000,000원	

(2) 설령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 B는 원고로부터 전항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망 B가 대물변제한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00원³)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 판단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7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는 최초 망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B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본소를 수계한 사실, 그런데 피고 C에 대해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현재 공시송달로 이 사건 본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2022. 9. 6.자 화해권고 결정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동시에 더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결국 원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 등을 통해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한편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4)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모두 176,586,305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두 177,086,952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 D에게 500,64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104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전항과 같은 대물변제로 인해 피고들은 매월 약 100만에 달하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원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변제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5)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해야 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은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금액에만 도달한 것으로 보일뿐, 달리 비용,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과다하게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오랜 기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대물변제 자체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건물내역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73.16㎡(부동산중개업소)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충청남도 예산군

지 목 : 대

면 적 : 385㎡



-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변론기일 2회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 종결되었다.
- 3) 원금만을 구하고 있다.
- 4) 2022. 6.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함.
- 5) 약정이자에 의함. 다만 이세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다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에 의함.